부조리신고센터운영지침

제정 2009. 12. 31. 개정 2013. 9. 1.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.) 임·직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·조사·처리 및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처리절차를 정하여 부조리신고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부조리행위의 신고에 관하여는 「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」 (이하 "「행동강령」"이라 한다) 또는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.
- 제3조(신고자) 진흥원 임·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진흥원 임·직원으로부터 부조리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다.
- 제4조(신고방법) 부조리행위의 신고는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감사담당부서에 있는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며 등재된 신고 서식 별표에 의한다.
- 제5조(부조리신고 접수) ①부조리행위의 신고는 진홍원 홈페이지 또는 감사담당부서에 실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나, 신고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.
 - ②부조리행위의 신고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신고사항의 확인조사) ①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직접 방문하거나,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②신고자가 명백하지 아니한 신고내용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고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, 신고자가 기한 내에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 - ③신고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부조리행위가 인정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확인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.
 - ④부조리행위의 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고,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다.

- 제7조(신고자의 신분보장) ①부조리행위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「행동강령」 제35조에 의한다.
- 제8조(신고자 보상) ①「행동강령」 위반 등 부조리행위의 신고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「행동강령」 제36조에 따라 수수금지된 금품 등을 반환한 신고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원장격려품을 증정할 수 있다.
- 제9조(부조리신고 처리업무의 주관) 「행동강령」 제46조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부조리 신고 처리업무를 총괄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9. 1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부조리신고센터 신고 서식		
신청인명	*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나, 원하실 경우 가명 등록 가능	
연 락 처		
전자우편		
제 목		
내 용		